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1차)

1.일 시	2024년 1월 9일(화) 10시	2.장 소	9동 1층 중회의실
3.참석자	백 , 김 , 김 , 박 , 김 , 염 , 이	4.불참자	이 , 류
5.안 건	2024학년도 등록금 산정(안)		
회의 내용			
<p>위 원 장 : 고등교육법 제11조,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,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며 개회를 선언하고, 2024학년도 등록금 산정(안)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함.</p> <p>안건 심의에 앞서,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, 위원·위원장의 선임방법,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들에 설명하고, 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들에게 물음.</p> <p>위 원 :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고 위원 모두 동의함.</p> <p>(제 1의 안) 2024학년도 등록금 산정(안)</p> <p>위 원 장 : 2024학년도 등록금 산정(안)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.</p> <p>주무부서 : 김: 위원은 대학은 평균등록금을 2013학년도 1% 인하, 2014학년도 0.3% 인하, 2015~2023학년도 동결했고, 교육부의 입학금 감축 및 폐지 정책에 따라 2018~2023학년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.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대학운영 경상비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 등록금 수입은 더욱 감소한 상황에 직면함.</p> <p>2024학년도 본예산 등록금회계 예산 신청 현황에 따른 재원의 수지 차이는 약 56억 원 수준이고,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등록금 수입 누적 감소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. 대전·충청지역 14개 사립 전문대학 평균등록금도 최하위에 위치해 있음.</p> <p>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라 등록금 산정 시, 입학금 실비용 분은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학기 수업료에 한하여 산입을 진행하고 해당 산입 금액은 국가장학금</p>			
<p>간서명 - 위원 : 김 위원 : 박 위원 : 염</p>			

II 유형(신·편입생 지원)장학금을 통해 지원 예정임. 장기간의 평균등록금 인하·동결, 입학금 감축·폐지, 물가상승에 따른 대학운영 경상비 증가 등에 따른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대학 평균등록금을 5.64% 인상할 것을 제안함.

위 원 : 박 위원 등록금 인상을 산출 근거에 대하여 질의함.

주무부서 : 김 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(대학원)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을 공고하였고, 공고에 근거한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에 해당하는 5.64%임을 설명함.

위 원 : 염 위원은 평균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참여 불가에 대하여 재학생들에 끼치게 될 불이익이 없는지 적절히 검토됐는지 다시 질의함.

주무부서 : 김 위원은 국가장학금 II 유형(대학연계지원형)에 상당한 대학 자체 장학금을 조성하여 수혜 대상 학생들에게는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답변함.

위 원 장 : 등록금 인상(안)에 대하여 금일 논의된 내용과 위원들 각자의 재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함.

위 원 : 위원 모두 동의함.

위 원 장 :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김 위원, 학생 측 박 위원, 외부 인사 염 위원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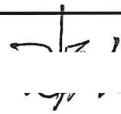
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·날인함

2024년 1월 9일

위원장 : 백



부위원장: 김



위 원 : 김



위 원 : 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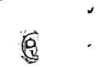
위 원 : 이

① 염

위 원 : 이



위 원 : 박



위 원 : 류

① 염

위 원 : 김

